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59
----------	-----

제출년월일 : 1998.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97년 6월 3일자로 읍,면,동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이관됨에 따라 파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 위원회인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는 존속해야 할 필요가 없음.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 [1996. 3. 1 조례 제86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읍·면·동지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심의회는 읍·면·동에 설치·운영한다.

제 3 조(심의사항) 심의회는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의한다.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산정된 지가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한 의견
3. 기타 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제 4 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부읍장 및 사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지가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회의소집) 심의회의 회의는 년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의결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기준년도를 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94.3.11 93누159)

第11條【他人土地에의出入등】① 감정평가업자는 이 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調査·評價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許可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占有者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第12條【土地評價委員會】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事項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選定 및 관리지침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標準地의 가격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改訂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에 관한 사항

第13條【土地評價委員會】① 법제12조제4항본문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이라 함은 재정경제원·내무부·농림수산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事務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副委員長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補佐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5條【證票 및 許可證】 법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證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하고, 許可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94.10.14>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附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附屬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依頼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鑑定評價士·鑑定評價業

第13條【職務】鑑定評價士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第14條【資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감정평가사의 資格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召集하고 그 의장이 되며, 開會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在籍委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出席委員 과반수의 贊成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14條【地方土地評價委員會】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地方土地評價委員會를 둔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당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委囑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試驗實施機關】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鑑定評價士資格試驗(이하 "試驗"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第16條【第1次試驗의免除】①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제14조제1항제2호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第6條【應試驗 및 手數料等】① 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鑑定評價士資格試驗(이하 "試驗"이라 한다)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手數料로서 3천원의 수입인